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9. 23.(수) 10:33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33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공개

- 한상혁 위원장
  - 제5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20-51-235)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지원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변경허가에 다음과 같이 일부 조건을 수정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한다’입니다. 조건 수정(안)입니다. 신설법인 (주)현대에이치씨엔은 존속법인 (주)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법인 (주)현대에이치씨엔은 매년 존속법인 (주)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존속법인 (주)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법인 (주)현대에이치씨엔의 최대액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이 조건의 효력은 당해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 따른다. 밑줄 친 부분이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안)입니다. 신설법인 (주)현대에이치씨엔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주)현대에이치씨엔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인 현대HCN에 대한 분할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과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 과기정통부는 현대HCN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받았고, 8월 27일 위원회에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9월 10일~11일까지 이틀 동안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회계분야 심사위원 1인을 포함한 회계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였고, 심사기간 중 현대HCN 대표이사 등에 대해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분할 전에 (주)현대에이치씨엔이 분할 후에 (주)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주)현대에이치씨엔 자회사로 분할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현황은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송구역과 가입자 수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주요내용입니다. 방송·법률·회계 분야의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약식심사위원회가 대상 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과기정통부 조건(안) 등을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에 동의하되, 과기정통부 조건(안) 일부수정 및 권고사항 부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약식심사위원회 주요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 수정 관련해서는 '최다액출자자'라는 표현을 '현대퓨처넷'으로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당 금액만을 추가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HCN이 자회사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조건의 지속여부는 향후 최다액출자자 변경 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건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안) 부가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인 현대HCN이 분할 후에 비상장회사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해서 그 이후에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미디어콘텐츠 투자 이행 관련해서는 향후 진행되는 M&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건의 다양한 해석을 방지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수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수정(안) 취지를 존중하되, 일부 표현을 수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문구를 '이 조건의 효력은 당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 따른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 과기정통부 조건(안)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조건 외 다른 조건들은 과기정통부 조건(안)이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가입자 승계 및 종사자 고용승계 등으로 지난 재허가 시에 조건으로도 부가된 바 있고, 사업자도 이행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분할 후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의 확실한 계획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조건 부가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경영투명성 관련해서는 존속법인 및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영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있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일부 문구는 권고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대HCN의 법인분할 변경허가 사전동의 안건입니다. 현대HCN이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콘텐츠 투자 이행 보증 조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또 신설법인의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권고안을 추가하는 사무처(안)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과 직원 분들 수고하셨고,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특별한 이의가 없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약식이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심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사무처에서도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조건, 그리고 관련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자회사가 모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이나 향후 M&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과기정통부 조건(안)에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하셨습니다.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유료방송 체계 개편 동향을 잘 파악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제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모두 원안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 (2020-51-236)**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가> “ 「방송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윤정 방송광고정책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광고정책과장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로 협찬의 허용 범위를 명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9년 6월 19일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드리고, 2019년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 22일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체부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광고법」 관련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에 따라 2020년 5월 18일 「방송법」 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안) 전체회의 보고를 거쳐 2020년 5월 25일~6월 1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거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 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보장 및 협찬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로서 '협찬'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협찬의 종류입니다. 개정 내용은 협찬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협찬, 공익적 성격의 행사 협찬, 공익적 성격의 캠페인 협찬으로 법률에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협찬의 허용범위입니다. 개정 내용에서는 원칙적으로 협찬을 허용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단체의 협찬과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협찬고지의 허용 범위입니다. 개정 내용은 협찬고지는 자율로 하되,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과 또는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주류, 의료, 전문의약품 등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찬에 대해서는 협찬고지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문체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광고법에 따라 정부기관 등이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표> 제5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세부 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 내용은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방통위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찬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협찬을 받아 제작·방송이 완료된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시청자·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입니다.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협찬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방송프로그램 협찬은 방송프로그램별 수입내역도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광고·협찬 관련 모니터링 및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과징금,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협찬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가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적용례를 두어 제74조제2항 정치단체 협찬,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과 관련된 협찬금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방송 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주와 협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선 사무처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사회적 논란 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협찬을 둘러싼 논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이거나 특정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하고 잘못된 일이고 그에 응당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협찬광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협찬이 광고와 함께 크게는 방송사 경영 전체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유희유 역할을 해 왔던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방송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이 2014년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는 9,500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조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와중에 군소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런 규제가 경제주체 등의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방송의 편성 독립성이나 또는 영업행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명확한 정의 개념이나 금지 행위, 자료 보관, 제출 의무까지 법률에 포함되어 투명한 협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 대로 협찬고지가 의무화되면 TV홈쇼핑과의 연계편성을 통해 광고효과를 주는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최근에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로고나 정책 등을 간접적·우회적으로 포함시키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회적인 프로그램이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회적인 프로그램을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방송 현장에서 이런 협찬광고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또 미디어 시청자·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안건은 협찬의 법적 근거를 방송법에 명시하고 협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건전한 방송 콘텐츠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좀 더 정직한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규개위와 또 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고, 또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재입법 예고까지 거치면서 개정안을 만든 사무처 고생 많이 하셨고, 이른 시일 내에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무처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찬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법 규정이 없거나 또 애매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사도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된 행정기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명확히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방송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찬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유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송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우리 사무처에서도, 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의미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연계 편성 문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계 편성의 경우에는 이른바 표시광고법에서 이야기하는 허위·과장광고보다 더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 자율 영역이고 광고영업 영역이어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광고보다 더한 신뢰를 주는 프로그램에서 광고행위들이 계속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연계 편성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덧붙여서 결국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제도 정비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계 편성에 대해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언론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방통위의 역할에 대한 주문이 있는 만큼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고금지 품목은 협찬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협찬고지도 현행법상 못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차후 고민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인터넷이용정책과장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4개 법인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신용평가사, 이통사, 신용카드사 등 총 14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방식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의 공인인증기관은 방통위 고시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의제되었으나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

인증제도는 올해 12월 10일에 폐지 예정입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4개 기관은 지난 7월 21일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이며,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에 과기정통부에서 본인인증제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21일에는 금융결제원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정 신청서 제출에 대해 7월 29일~9월 4일까지 방통위는 신청기관 대상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현재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청취와 개선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한국무역정보통신,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등 4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정관과 규약, 과거 3개 년간의 재무제표 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별표 2>에 따라 총 92개 세부평가기준 항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학계, 정보보호 전문가,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10인 이내 범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고시에 따라 방통위는 10인 이내 범위에서 심사위원 위촉이 가능하고, 인원은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심사 일정이 6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과 심사 특성상 기술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정기점검, 인증심사 참여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은 서류심사에 약 10일이 소요되며, 법인별 현장실사가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92개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지정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내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 조건 부가가 가능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9월 25일~10월 6일까지 서류심사를 한 후 10월 12일~11월 6일까지 현장실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실사 모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등 상황 발생 시 심사 일정은 조금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본인확인기관 현황 및 신규 신청 법인 개요와 관련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요즘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히 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온라인상 본인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목받을 만한 것은 국내 유수의 IT기업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보다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 수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보안, 안전성이지요. 이번 심사위원회는 6주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기한이 소요되는, 그만큼 또 엄격하게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대만큼이나 정말 안전성, 그다음에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이 확대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기관이니만큼 심사계획을 잘 세워서 엄격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코로나 사태로 올해 상반기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약 15.3% 증가하였고 이런 추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이 심사를 통해 본인확인 시장에 진입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청법인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등을 충실히 마련하였는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본인확인서비스는 인터넷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개인 신용 확인을 위한 필수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본인확인이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좀 더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본인확인 문제는 번거로움과 편의성 그리고 보안이 상호간 약간씩 모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안에 특별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심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접수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한 이후 지정기관들의 운영실태들에 대해서도 향후 사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지정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사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과 <보고사항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똑같이 n번방 후속 입법이니까 이 2개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보고하고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지난 7월 22일 위원회 보고 후 입법예고를 실시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과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입법예고 추진 사유입니다. 법제처는 전기통신사업법 내용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대상 사업자 범위 구체화 등은 ‘중요한 내용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재입법 내용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위원회 보고안을 기본으로 해서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자 등 이행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시적 차단조치 등에 대한 삭제입니다.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 게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차단할 의무는 삭제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화한 부분입니다. 방통위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이 최초 입법예고안이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서비스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의 요건 부분이 대상사업자의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에 받은 자 부분이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법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자를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정요구를 받은 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입법예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통위 최초 보고안과 재입법예고안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색결과 제한조치 관련 유형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는데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검색결과 제한 조치의 경우, 이용자의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외에도 불법촬영물등이 검색결과로 송출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역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확대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조치의무사업자의 조치기한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초에 저희가 지정하면서 조치의

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한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 기존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률에서 지정한 시행시기를 별도로 위임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반영해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 자구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붙임>자료를 별첨하면 자구 수정이 미세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접수해 주시면 재입법예고안을 다음 주부터 재입법예고해서 10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위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 시행일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동일합니다. 위원회 보고 이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재입법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동일하게 최초 입법예고할 때 정보통신망상에서 불법촬영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의무사업자 범위에 대해 같이 규정해 놓은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대상 서비스 유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부분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유통 가능성이나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서 방통위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서비스 유형을 시행령에 규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 이내 사항에 대한 요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부분과 동일하게 법률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시정요구를 2년 이내 받은 자 부분은 유통방지 책임자 의무에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3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책임자 지정기한을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매년 6월 말까지로 책임자 지정기한이 명시되어 있던 부분들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는 것이 법제처 의견이었기 때문에 책임자 지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는 부분으로 적용되어서 지정기한 삭제를 해서 재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임자 교육시간이 최초 입법예고안에 들어 있었는데 교육시간을 '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입법취지와 달리 교육시간이 지나치게 적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2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자 교육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동법 시행시기가 2020년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책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부칙 조항에 포함시켜서 다음해 연말까지 최초 적용될 경우 2021년 12월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특례 규정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자구 수정에 대한 부분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구 수정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다시 재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 시행일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원래 방통위 안에는 교육시간과 관련해서 '2시간 이내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입법예고안에는 '2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와 '이상'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2시간 이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착오였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이내'라고 하면 1시간도 될 수 있고 그것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문안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법제처 등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 임시 조치의무를 삭제하고, 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 요건을 방통위의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인 부가통신사업자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SNS,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서비스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올 12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행령 개정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질의사항 내지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선 이 안건은 소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다루는 법안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유통방지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불법촬영물 같은 것들이지요. 여기에 보면 그 문제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임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차단 조치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일단 방심위 심의를 받아보고 가짜로 밝혀질 경우, 그러니까 불법촬영물로 밝혀질 경우에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거기에서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나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왜냐하면 불법촬영물은 지금 인터넷 시대에 순식간에 나돌아 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비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촬영물을 보고 바로 방심위원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삭제하도록 하는, 그렇게 한 단계의 완충역할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현재 누구든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삭제하는 조항이 지난번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 재입법예고하는 부분에서는 사업자들이 신고를 받았을 경우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는 부분이 제3항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차단조치를 해 놓고 방심위의 심의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시적으로 차단 조치하는 부분을 바로 방심위에서 심의 조치를 해서 심의조치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바뀌서 재입법예고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방심위에서는 1일 이내에 디지털 성범죄물은 서면전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디지털성범죄추진단을 만들어서 서면전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속한 삭제 판단까지 의결은 1일 이내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임시 조치 문제에 대한 법제처 의견의 요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나 의무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기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거나 피해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방심위에 심의 요구한 다음에 신속하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삭제된 만큼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성호 사무처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시 조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법제처에서는 이것이 법에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을 바꾸는 방법도 나중에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 방통위가 매년 지정했다가 SNS, 커뮤니티, 대화방 그다음에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서비스 등으로 유형화하도록 변경했는데 이것이 분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그 위에 보시면 최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지금 제2호가 구체화되면서 유형이 추가된 부분인 것이고, 제1호 부분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에 대한 사업자 규모에 대한 부분도 또한 같이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와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령에 담기면 해당 사업자가 이 유형과 규모를 본인들이 파악하고 지정대상이 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위해서 유형화로 더 구체화해서 넣는 부분이 추가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사업자에 실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정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대상사업자들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점검도 해야 하고, 또 투명성 보고서도 받아야 합니다. 대상사업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해설서를 마련하고 또 홍보를 실시해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랫폼사업자에게 새로 신규로 추가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같이 반영되어서 법에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지정대상이 됐을 경우 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시행령 마련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원활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많이 논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도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간의 우려 충분히 고려해서 불법촬영물 내지는 성착취물 유통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8분 폐회 】